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해제)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 출 : 2007. 9. 6(사천시장)
- 나. 회 부 : 2007. 9. 6(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의안번호 제63호)
- 다. 상 정 : 2007. 9. 17(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도시과장 : 강상민)

가. 제안사유

-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방안에 따라 서포면 일원의 수산자원 보호구역조정(해제) 대상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합리적으로 변경, 결정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 사천시 서포면 일원
- 전체면적 : 64,929,000m²(육지 21,279,000m², 해면 43,650,000m²)
- 해제면적 : 11,890,000m²(육지부만 해제됨)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관 리 지 역	소 계	104,408,234	—	104,408,234	
	관리지역(미세분)	101,148,211	(증)10,438,400	111,586,611	
	보전관리지역	—	—	—	
	생산관리지역	—	—	—	
	계획관리지역	3,260,023	—	3,260,023	
농림지역		181,865,740	(증) 1,451,600	183,317,340	
자연환경보전지역		91,428,000	(감)11,890,000	79,538,000	(해면부) (65,816,000)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m ²)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사천시 서포면일 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리 지역	10,438,400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을 지정하였으나 해양수산부의 수산자 원보호구역 조정방안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해제됨으로 당초 용도지역 으로 환원
	사천시 서포면일 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 지역	1,451,600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을 지정하였으나 해양수산부의 수산자 원보호구역 조정방안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해제됨으로 당초 용도지역 으로 환원(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 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사천수산자원 보호구역	사천시 서포면 일원	21,280,000	(감) 11,890,000	9,390,000	육역부
	사천수산자원 보호구역	사천시 서포면 일원	43,650,000	—	43,650,000	해면부

2)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m ²)	변경사유
변경		사천시 서포면 일원	육역부 21,280,000m ² →■ 9,390,000m ² (감 11,890,000m ²)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방안에 따라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해제로 인함

다.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3. 사천시의 의견

○ 서포면 일원의 수산자원구역 조정(해제) 대상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을 제안설명 요지, 주요내용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의 내용과 같이 변경코자 함.

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영욱)

- 본 안건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방안에 따라 서포면 일원 (내구, 다평, 구평, 자혜, 선전, 비토리)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해제) 대상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합리적으로 변경, 결정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 주요내용으로는
 - 서포면 일원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전체면적 64,929,000㎡(육지 21,279,000㎡, 해면 43,650,000㎡) 중 육지부 11,890,000㎡를 조정(해제)하여
 - 관리지역(미세분)을 당초 101,148,211㎡에서 10,438,400㎡가 증가한 111,586,611㎡로
 - 농림지역을 당초 181,865,740㎡에서 1,451,600㎡가 증가한 183,317,340㎡로 변경되고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당초 91,428,000㎡에서 육지부 11,890,000㎡가 감소한 79,538,000㎡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 본 안건 검토 결과 문제점으로
 - 안건 1페이지 “3”주요골자의 “나”의 수치와 3페이지 “나” 1) “나”에 표기된 수치가 일치되지 않고
 - 안건 1페이지 “3” 다()에 표시된 용어(육지부)와 3페이지 “나” 1)의 비교란 용어(육역부)가 일치 되지 않으며
 - 관련법규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의회 의견제시 기한을 명시토록 되어 있음에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 시의회 의견은 법규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 관련된 지역주민의 의견청취가 완료된 후 이를 토대로 시의회 차원의 충분한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임에도
 - 관련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본 안건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지역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이 상충될 수 있음
 - 상기와 같은 문제점은 의원의 의안 심사시 혼동과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상기 문제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도시과에 수차례 수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행되지 않은 사항임
- 본 안건 검토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도시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본 안건은 해양수산부의 수자원보호구역 조정방안이 본 안건 내용과 같이 확정된 상태로서 서포면 일원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해제) 대상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합리적으로 변경, 결정하여 지역발전 도모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천시 의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여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찬성의견

8. 소수의견 : 없음